



군민과 함께 희망을 여는 의회

〔 2026. 7. 28.(화) 〕  
제340회 임시회

---

# 심 사 결 과 보 고 서

---



## 완 도 군 의 회

# 의회운영위원회

## □ 심사경과

[illegible]

【의안번호 제3613호】

##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7. 13.      김세윤 의원 외 8명

나. 회부일자 : 2026. 7. 13.

다. 상정일자 : 2026. 7. 20.

### 2. 제안설명요지

#### 가. 제안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446호, 2026.3.5., 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6년 7월 1일 출범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개정 전)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  
(개정 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안 제6조제1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심사의견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남도 위임사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로, “전라남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u>전라남도 위임사무</u> 중 국회나 <u>전라남도의회</u> 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br>-----<br>-----<br>----- <u>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u> -----<br>-----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u> -----<br>-----. |
|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

# 행정자치위원회

## □ 심사경과

[illegible]

【의안번호 제3614호】

#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7. 7.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6. 7. 20.
- 다. 상정일자 : 2026. 7.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시효일에 맞춰 부조리 공직자 등에 대한 신고 기한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신고 보상금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적용 대상자 정비(안 제2조)
- 부조리 신고 기한의 정비(안 제4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대상의 범위를 공무원 외에 공무원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기재생략

### 6. 심사의견: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완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나. 「완도군 공무원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원근로자 및

「완도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완도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마.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바. 군수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 시효 만료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조리 행위가 「형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br>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u>공무원등</u> ”이란 <u>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본청.군의회.직속기관.사업소.읍면.출장소 소속 공무원과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u> | 제2조(정의) -----<br>-----<br>1. “ <u>공무원등</u>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br>가. <u>완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u><br>나. 「 <u>완도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u> 」에 따른 <u>공무직 근로자</u> 및 「 <u>완도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u> 」에 따른 <u>기간제근로자</u><br>다. 「 <u>청원경찰법</u> 」에 따른 <u>청원경찰로서 완도군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사람</u><br>라. 「 <u>지방공기업법</u> 」에 따라 <u>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u><br>마. <u>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u><br>바. <u>군수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u> |

|                                                                                                                                                                                    |                                                                                                                                                                                                                                                                    |
|------------------------------------------------------------------------------------------------------------------------------------------------------------------------------------|--------------------------------------------------------------------------------------------------------------------------------------------------------------------------------------------------------------------------------------------------------------------|
| <p>2. (생략)</p> <p>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의한 신고 기한은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로 한다. 다만,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로 한다.</p> | <p><u>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u></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조리 행위가 「형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할 수 있다.</p>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근거 규정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 미첨부 사유

-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의안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임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대상인 '공무원등'의 범위를 산하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 기한을 관련 법령에 맞춰 연장하는 사안임
- 신고 대상 및 기한 확대에 따라 향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건수 및 세출(군비) 증가 요인이 수반될 수 있으나, 예상되는 총비용(보상금 지급액)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일 때)'에 따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향후 신고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에는 기 확보된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감사팀장 조봉흠 / 담당자 황혜숙

기획예산실 한 회 석

【의안번호 제3615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7. 20.

다. 상정일자 : 2026. 7.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완도군 자치법규의 전라남도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군 자치법규에서 인용 중인 전라남도 자치법규를 통합특별시에 맞게 일괄개정하여 법규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전라남도 관련 명칭 정비 조례 80개
  - 전라남도 · 전남 · 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라남도지사 · 도지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 도비·도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 · 시세 등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완도군 자치법규의 전라남도 관련 명칭과 인용 자치법규를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기재생략

### 6. 심사의견: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일괄 개정조례안 1부. 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완도군 자치법규

###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제2호가목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제4호가목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2조(「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개정)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조(「완도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7조 본문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완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조(「완도군보 발행 조례」의 개정) 완도군보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전라남도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보”로 한다.

제6조(「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완도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8조(「완도군 반 설치 조례」의 개정) 완도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도지사가”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0조(「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지사”를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1조(「완도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나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2조(「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5항제2호 및 제6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3조(「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4조(「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5조(「완도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문화관광해설사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7조(「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8조(「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9조(「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전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0조(「완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1조(「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의 개정) 완도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2조(「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스마트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3조(「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완도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4조(「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전라남도의회의원”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한다.

제25조(「완도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의 개정) 완도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도에”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로 한다.

제26조(「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하고 “도지사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로 한다.

제27조(「완도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조례」의 개정) 완도군 지

방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8조(「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이하 “통합특별시세”라 한다)”로 하고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세 기본조례(통합특별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29조(「완도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세”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로 한다.

제30조(「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1조(「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2조(「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호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3조(「완도군 한옥지원 조례」의 개정) 완도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통합특별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도지사가”를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를 각각 “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34조(「완도군 건축조례」의 개정)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5조(「완도군 지적재조사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지적재조사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2호 중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36조(「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7조(「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8조(「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9조(「완도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출생 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5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 중 “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0조(「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기능인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도내”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내”로 한다.

제41조(「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 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2조(「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문화예술의 전당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3조(「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4조(「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5조(「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우수 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도”와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6조(「완도군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완도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7조(「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의 개정) 완도군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8조(「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49조(「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0조(「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의 개정) 완도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1조(「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완도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2조(「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1제2항제5호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3조(「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54조(「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5조(「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의 개정)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6조(「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도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로 한다.

제57조(「완도군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물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농수산물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8조(「완도군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59조(「완도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산림에 인접된 논·밭두렁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전라남도화재 예방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재 예방 조례」”로 한다.

제60조(「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약산 해안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1조(「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완도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2조(「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의 개정) 완도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3조(「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전라남도지사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4조(「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5조(「완도군 경관조례」의 개정) 완도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 중 “「전라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66조(「완도군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4조제2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7조(「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68조(「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도지사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로 한다.

제69조(「완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완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0조(「완도군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1조(「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 중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

례」”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2조(「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3조(「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 대책본부”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중 “전라남도지사”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4조(「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5조(「완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

라남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본부장(이하 “통합특별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중 “전라남도”를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전라남도”를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라남도”를 각각 “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6조(「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7조(「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도지사”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한다.

제78조(「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장보고기념관 및 부속건물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호 및 제2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79조(「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중 “전남”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제80조(「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의 개정) 완도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전라남도지사로부터”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근거 규정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 미첨부 사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바뀌는 명칭에 관한 일괄 개정 조례안으로써 예산 편성 또는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본 일괄 개정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반영한 단순 자구 정비 사항으로, 신규사업 추진이나 재정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지 않음

### ○ 작성자

- 기획예산실 법무통계팀장 이희정 / 담당자 임완철 주무관

기획예산실장 한 희 석

【의안번호 제3616호】

#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7. 20.

다. 상정일자 : 2026. 7.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외부위원 수 확대 및 다양한 분야의 균형있는 위원의 구성을 통해 위원회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제한하는 단서 조항 신설(제7조제1항)
- 추천 등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구성토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제7조제2항)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기재생략

### 6. 심사의견: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있다.”를 “있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br>-----<br>-----<br>-----                                                                                                                                                    |
|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② 군수는 위촉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보 및 군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 ② -----<br>-----<br>-----<br>-----<br>-----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고,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br><br>1. ~ 4. (현행과 같음) |
| 1. ~ 4. (생략)<br>③ ~ ⑤ (생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근거 규정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 미첨부 사유

-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울 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완도군 산하 위원회의 공무원 비율을 제한하고 민간 위원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선언적·권고적 성격의 의안으로서 조례 개정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세출의 순증가나 세입의 순감소 요인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부합하므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각 위원회별 민간 위원 위촉 확대에 따라 위원 수당 등의 미미한 재정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부서별로 기 편성되어 있는 기존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 내에서 자체 충당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작성자

- 행정지원과 서무팀장 정경석 / 담당자 황성희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이 기 석

【의안번호 제3617호】

##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7. 20.

다. 상정일자 : 2026. 7.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중 미반영된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 [별표 3] 수산관계 인·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요금표 정비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 기준을 반영하여 수산관계 인·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기재생략

### 6. 심사의견: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 현 행 안

[별표 3]

수산물거래 인·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구 분                                                   | 기준 | 수수료    | 비 고 |
|-------------------------------------------------------|----|--------|-----|
| 1.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건당 | 2,500원 |     |
|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 건당 | 9,000원 |     |
|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건당 | 7,500원 |     |
|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건당 | 5,000원 |     |
| 5.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6.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5,000원 |     |
| 7.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8.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9.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건당 | 5,000원 |     |
| 10.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11. (삭제 2017. 6. 30.)                                 |    |        |     |
| 1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13.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건당 | 800원   |     |
| 14.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4,000원 |     |
| 15.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2,500원 |     |
| 16.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17.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18.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19.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20. (삭제 2017. 6. 30.)                                 |    |        |     |

| 구 분                         | 기준 | 수수료    | 비 고 |
|-----------------------------|----|--------|-----|
| 21. (삭제 2017. 6. 30.)       |    |        |     |
| 22.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23.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24.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건당 | 4,500원 |     |
| 25.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건당 | 2,500원 |     |
| 26.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건당 | 4,500원 |     |
| 27.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 건당 | 4,000원 |     |
| 28. (삭제 2017. 6. 30.)       |    |        |     |
| 29.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건당 | 1,500원 |     |
| 30.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31.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32.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33. 어업 신고 수수료               | 건당 | 1,500원 |     |
| 34.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건당 | 1,500원 |     |
| 35.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건당 | 1,500원 |     |
| 36.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37.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 건당 | 800원   |     |
| 38.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39.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 건당 | 800원   |     |
| 40.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구 분                                                                      | 기준 | 수수료    | 비 고 |
|--------------------------------------------------------------------------|----|--------|-----|
| 41.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2.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3.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44.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5.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6.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건당 | 4,500원 |     |
| 47.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8.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9. (삭제 2017. 6. 30.)                                                    |    |        |     |
| 50.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51.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5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5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54.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55.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56.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건당 | 800원   |     |
| 57. (삭제 2017. 6. 30.)                                                    |    |        |     |
| 58. 월동장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4,000원 |     |
| 59. 토지공작물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6,000원 |     |
| 60. 토지출입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4,000원 |     |

## 붙임 2

## 개 정 안

[별표 3]

수산물거래 인·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제3호 관련)

| 구 분                                                   | 기준 | 수수료    | 비 고 |
|-------------------------------------------------------|----|--------|-----|
| 1. 관상어양식업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2. 낚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 건당 | 2,500원 |     |
| 3. 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건당 | 1,500원 |     |
| 4. 수상레저기구 등록·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 건당 | 1,500원 |     |
| 5.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재발급                                     | 건당 | 1,500원 |     |
| 6.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정치망어업) 수수료                              | 건당 | 9,000원 |     |
| 7.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 건당 | 7,500원 |     |
| 8.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 건당 | 5,000원 |     |
| 9.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10.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5,000원 |     |
| 11.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12.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공동신청사항<br>(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13.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 건당 | 5,000원 |     |
| 14.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br>재발급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15.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16.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 건당 | 800원   |     |

|                                    |    |        |  |
|------------------------------------|----|--------|--|
| 17. 어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4,000원 |  |
| 18.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2,500원 |  |
| 19.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20.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21.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22.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23.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24.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25.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 건당 | 4,500원 |  |
| 26.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 건당 | 2,500원 |  |
| 27.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 건당 | 4,500원 |  |
| 28.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 건당 | 1,500원 |  |
| 29.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30.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31. 어업허가(연안어업)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 건당 | 2,500원 |  |
| 32. 어업허가(구획어업)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         | 건당 | 4,500원 |  |
| 33.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34. 어업신고 수수료                       | 건당 | 1,500원 |  |
| 3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 건당 | 1,500원 |  |
| 36.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건당 | 1,500원 |  |

|                                                                   |    |        |  |
|-------------------------------------------------------------------|----|--------|--|
| 37.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38. 허가어업 ·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수수료                                         | 건당 | 800원   |  |
| 39.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40.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41.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2.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연장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3.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44.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5.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6.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 건당 | 4,500원 |  |
| 47.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8. 수산자원 포획 · 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49. 양식업(해조류양식업 · 패류양식업 · 어류등양식업 · 복합양식업 · 협동양식업 · 외해양식업)면허 신청 수수료 | 건당 | 5,000원 |  |
| 50.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수수료                                               | 건당 | 9,000원 |  |
| 51. 양식업면허증 재발급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52.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 변경 · 지분 변경)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53. 양식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54. 양식업권 포기 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55. 양식업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56.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 초본 발급 수수료                                   | 건당 | 800원   |  |

|                                                                            |    |        |  |
|----------------------------------------------------------------------------|----|--------|--|
| 57.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4,000원 |  |
| 58.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2,500원 |  |
| 59.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60. 양식장 관리선 사용 지정 및 관리선 사용 승인 신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61. 양식장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62. 양식장 관리선 사용 지정(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63.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 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4,000원 |  |
| 64. 양식업허가증의 재발급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65. 양식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1,500원 |  |
| 66. 양식업 변경신고 수수료                                                           | 건당 | 1,500원 |  |
| 67. 양식업 폐업신고 수수료                                                           | 건당 | 800원   |  |
| 68.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69. 양식시설물 철거의무면제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70. 양식시설물 철거의무연장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71.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72.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73.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74.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2,000원 |  |
| 7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76.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 · 개조허가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 건당 | 1,000원 |  |

|                               |    |        |  |
|-------------------------------|----|--------|--|
| 77.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 건당 | 3,000원 |  |
| 78.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 초본 발급 수수료 | 건당 | 800원   |  |
| 79.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               | 건당 | 2,000원 |  |
| 80. 어획물운반업 폐업                 | 건당 | 800원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 미첨부 근거 규정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 미첨부 사유

-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의안 내용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임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 ○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 인·허가 수수료 요율표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수수료 징수에 따른 완도군 세외수입(세입)의 순증가가 예상됨.
- 「완도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추계 대상 "비용(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발생 요인이 없음.
- 따라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작성자

- 세무회계과 징수팀장 김정민 / 담당자 곽민정

세무회계과장 천 중 실

# 산업건설위원회

## □ 심사경과

[illegible]

【의안번호 제3618호】

# 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7. 7. 완도군수
- 나. 회부일자 : 2026. 7. 20.
- 다. 상정일자 : 2026. 7.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5조제1항의 개정예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상속 신고 기간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적용대상 완화(안 제3조)
- 상위법 위임 조항 오기 정정(안 제1조, 안 제4조제1항)
- 상속 신고기간의 연장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 상속 신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기재생략

### 6. 심사의견: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제1항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제15조제2항”을 “제15조”로, “상속을”을 “상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개인택시운송사업”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상속 신고 기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 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개정 전 법령에 따른 상속 신고 기간(90일)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도 제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u>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u> 」 제14조제3항,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br>-----<br>-----.                                                                                                                                           |
| 제3조(대상) 이 조례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적용한다.                                                                                                                                                                                | 제3조(대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및 그 상속인에게 적용한다.                                                                                                                                                                              |
| 제4조(양도 또는 상속)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u>자</u> 는 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u>상속</u> 할 수 있다.<br><br>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u>자</u> 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 | 제4조(양도 또는 상속) ① <u>개인택시운송사업</u> -----<br>----- <u>사람</u> 은 -----<br>----- <u>제15조</u> -----<br>----- <u>상속</u> -----<br>-----.<br><br>② ----- <u>개인택시운송사업</u> -----<br>----- <u>사람</u> 이 -----<br>-----<br>-----<br>-----<br>----- |

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택시운  
송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

## <신 설>

[illegible]

제4조의2(상속 신고 기간) 개인택

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을 계속하려면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제3619호】

## 완도군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7. 20.

다. 상정일자 : 2026. 7.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완도군에서 조성한 숲속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8조)
- 시설의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2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완도군에서 조성한 숲속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이용과 관리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조례안 일부 조항 및 별표에서 “이용료”와 “사용료”라는 용어가 혼용되어 있어 조례 해석과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는 “이용료”로, “시설사용료”는 “시설이용료”로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기재생략

### 6. 심사의견: **수정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조성한 숲속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속야영장”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야영장, 트리하우스, 관리사무소, 화장실, 샤워실 그 밖의 편의시설 등 야영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숲속야영장을 관리·운영하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말한다.
5.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숲속야영장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약) ①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온라인을 통하여 이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설 이용료는 온라인 결제하거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입

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시설이용료) 숲속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을 별표1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5시간 이내 사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 사항 중복 발생 시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6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 사용 예정일 전에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시 그 기간과 사유를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안전관리 등 긴급한 사유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영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자의 책임 등)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야영장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복구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④ 이용자는 별표 4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9조(관리 및 위탁) ① 완도군 숲속야영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숲속야영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관리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시설이용료는 이 조례에 따르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양여·교환하거나 대여 등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④ 수탁자의 고의·과실로 시설 또는 비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할 수 없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및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이용료(제4조 관련)

(단위 : 원)

| 시설명       | 규격   | 이용료   |        |            | 이용시간<br>(1박)                      | 비 고                                                                                                                                                                                                                                                                                                                                                                                                                                                                  |
|-----------|------|-------|--------|------------|-----------------------------------|----------------------------------------------------------------------------------------------------------------------------------------------------------------------------------------------------------------------------------------------------------------------------------------------------------------------------------------------------------------------------------------------------------------------------------------------------------------------|
|           |      | 구분    | 비수기    | 성수기,<br>주말 |                                   |                                                                                                                                                                                                                                                                                                                                                                                                                                                                      |
| 야영장       | 4x5m | 1박    | 25,000 | 30,000     | 14:00<br>~<br>마지막<br>사용일<br>11:00 | 1. 비수기<br>성수기 및 주말을<br>제외한 기간<br>2. 성수기<br>(야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1일부터<br/>5월 31일까지</li> <li>• 9월 1일부터<br/>10월 31일까지</li> </ul> (트리하우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1일부터<br/>8월 31일까지</li> </ul> 3. 주 말<br>금·토요일,<br>공휴일 전일 및<br>공휴일<br>4. 트리하우스 인원<br>: 기준(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형 : 2인(3인)</li> <li>• B형 : 3인(4인)</li> <li>• C형 : 4인(6인)</li> </ul> ※ 기준인원 초과시<br>1인당(성인)<br>5,000원 추가<br>요금 징수 |
|           |      | 5시간   | 15,000 | 20,000     |                                   |                                                                                                                                                                                                                                                                                                                                                                                                                                                                      |
|           | 7x8m | 1박    | 35,000 | 40,000     |                                   |                                                                                                                                                                                                                                                                                                                                                                                                                                                                      |
|           |      | 5시간   | 25,000 | 30,000     |                                   |                                                                                                                                                                                                                                                                                                                                                                                                                                                                      |
| 트리<br>하우스 | A형   | 1박    | 50,000 | 60,000     |                                   |                                                                                                                                                                                                                                                                                                                                                                                                                                                                      |
|           | B형   | 1박    | 60,000 | 70,000     |                                   |                                                                                                                                                                                                                                                                                                                                                                                                                                                                      |
|           | C형   | 1박    | 70,000 | 80,000     |                                   |                                                                                                                                                                                                                                                                                                                                                                                                                                                                      |
| 전기이용료     |      | 3,000 |        |            |                                   |                                                                                                                                                                                                                                                                                                                                                                                                                                                                      |

[별표 2]

사용료의 감면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감면율           | 감면 대상                                                                                                                                                                                                                                                                                                                                                                                                                                                              | 시설사용료(원)                                                                                                    |                                                                                                             |
|---------------|--------------------------------------------------------------------------------------------------------------------------------------------------------------------------------------------------------------------------------------------------------------------------------------------------------------------------------------------------------------------------------------------------------------------------------------------------------------------|-------------------------------------------------------------------------------------------------------------|-------------------------------------------------------------------------------------------------------------|
|               |                                                                                                                                                                                                                                                                                                                                                                                                                                                                    | 평일                                                                                                          | 성수기·주말                                                                                                      |
| 전액감면          | 가. 완도군 주최, 주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br>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br>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무료                                                                                                          | 무료                                                                                                          |
| 100분의10<br>감면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br>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br>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br>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br>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br>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사람<br>사.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br>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br>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br>차. 「주민등록법」에 따라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br>카. 14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장기체류자 | 야영장(4x5)<br>22,500<br>야영장(7x8)<br>31,500<br><br>트리하우스<br>(A형)<br>45,000<br>(B형)<br>54,000<br>(C형)<br>63,000 | 야영장(4x5)<br>27,000<br>야영장(7x8)<br>36,000<br><br>트리하우스<br>(A형)<br>54,000<br>(B형)<br>63,000<br>(C형)<br>72,000 |
| 100분의20<br>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라 완도군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2호 가목부터 자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야영장(4x5)<br>20,000<br>야영장(7x8)<br>28,000<br><br>트리하우스<br>(A형)<br>40,000<br>(B형)<br>48,000<br>(C형)<br>56,000 | 야영장(4x5)<br>24,000<br>야영장(7x8)<br>32,000<br><br>트리하우스<br>(A형)<br>48,000<br>(B형)<br>56,000<br>(C형)<br>64,000 |

※ 감면사항 중복 발생 시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

[별표 3]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제6조 관련)

| 구분                                               |                                | 반환 기준            |                  |
|--------------------------------------------------|--------------------------------|------------------|------------------|
|                                                  |                                | 평일               | 성수기·주말           |
| 사용자의<br>의사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선납금 전액 반환        | 선납금 전액 반환        |
|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의 30% 공제 후 반환 | 선납금의 40% 공제 후 반환 |
|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의 50% 공제 후 반환 | 선납금의 60% 공제 후 반환 |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선납금의 80% 공제 후 반환 | 선납금의 90% 공제 후 반환 |
|                                                  | 당일 취소                          | 선납금 전액 공제        | 선납금 전액 공제        |
| 관리·운영자의<br>사정으로 인한 취소                            |                                | 선납금 전액 반환        |                  |
|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br>그 밖에 불가항력적인<br>사유로 사용이<br>불가능한 경우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br>이용이 불가한 경우     | 선납금 전액 반환        |                  |
|                                                  |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선납금 전액 반환        |                  |

※ 비고

- 1) 주말은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일 및 공휴일을 말한다.
- 2)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된다.
- 3) 예약신청 당일 취소는 예약신청한 날의 24시까지로 한다.
- 4) 사용자가 사용 당일 14:00까지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별표 4]

### 숲속야영장 준수사항(제8조제4항 관련)

#### 1. 이용시간

가. 야영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해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야 하며, 정숙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가능시간            | 예약지정한 날 14시 ~ 다음날 11시 까지 |
|--------------------|--------------------------|
| 야영장 정숙시간           | 21:00 ~ 07:00            |
| 야영장 소등시간           | 22:00 ~                  |
| 샤워장 폐쇄 및 자동차출입제한시간 | 22:00 ~ 07:00            |

#### 2. 이용안내사항

가. 한 사이트당 입장 정원을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나. 야영장 내 주차는 사이트당 지정된 주차공간에 등록차량 1대만 가능합니다.

다. 입실시간은 14시, 퇴실시간은 다음 날 11시입니다.

라. 전력사용은 최대 600W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 (600W 초과시 자동차단)

마. 야영장 내 숯, 그릴 등의 사용 시간은 20시 30분까지입니다. 20시 30분 이후로는 다른 이용객들을 위해 사용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쓰레기는 지정장소에서 분리수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금지사항

1) 한 사이트당 입장 정원(4인이내)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단, 가족관계 증명 시 최대 5인(예: 성인2명+자녀3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2) 이용도중 인원교체 및 입장 시 통보되지 않은 방문객은 입장 불가합니다.

3) 타인에게 야영장 이용 양도 또는 교환은 불가합니다.

4) 지정 이외 공간에서 취사를 금지합니다.

5) 야영장 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입니다.

6) 음주가무, 도박 등 소란행위, 폭죽놀이, 캠프파이어를 금지합니다.

7) 음식물 쓰레기 및 각종 오물투척을 금지합니다.

8)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단, 안내견은 입장 가능합니다.

9) 인라인스케이트, 보드, 자전거 및 전동장비 운행을 금지합니다.

10) 축구, 야구, 공놀이, 달리기 등 타인에게 피해가 되는 운동을 금합니다.

11)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이용가능하며, 미성년자 단독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 지나친 음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주변 이용객들을 위해 퇴거조치 및 이용제한 조치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텐트 내 난방기를 켜둔 채 취침하는 것을 일산화탄소 중독 및 화재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및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카. 숲속야영장 시설물 훼손 및 유실 시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비용 청구됩니다.

타. 위급사항의 경우(지진, 강풍 등)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파. 재난경보 시 100% 반환 가능하오니 되도록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도군 숲속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5시간 이내 <u>사용</u> 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5조(시설이용료 감면) ① -----<br>-----<br>-----.<br>----- <u>시설이용</u> -----<br>-----.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6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관리자는 납부된 시설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u>시설 사용료</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6조(시설이용료 반환) ① -----<br>-----<br>-----.<br>-----<br>----- <u>시설이용료</u> -----<br>-----.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별표 2] 사용료의 감면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별표 2] 이용료의 감면기준(제5조제1항 관련)                                                             |
| [별표 3] 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제6조 관련)                                                                                                             | [별표 3] 시설이용료의 반환기준(제6조 관련)                                                              |

【의안번호 제3620호】

##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7. 20.

다. 상정일자 : 2026. 7. 20.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제3항 [‘26. 7. 22.시행]에 따라 ‘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

나. 주요내용

- 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절차·임무 및 편제 등(안 제24조)
- 임무 및 표준편제 세부내역(별표 7)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은 없으나, 조례안 제24조 제2항 및 제6항 중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전라남도 대책본부”, “전라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부분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책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기재생략

### 6. 심사의견: **수정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완도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전라남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전라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

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센터를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 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 되는 경우 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24조(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u>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전라남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전라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p> <p><u>③ 피해자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피해자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u></p> |

④ 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7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지원센터를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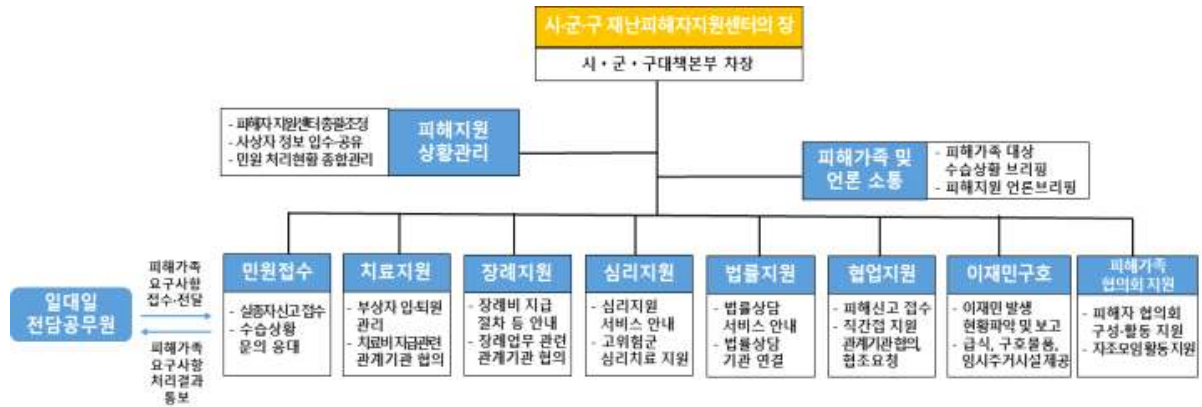
[별표 7]

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24조제4항 관련)

1. 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
| 가. 피해지원<br>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br>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br>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
| 나. 피해가족 및<br>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br>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br>사항 안내     |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br>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br>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br>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br>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br>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br>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br>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br>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br>3) 임시주거시설 제공                             |
| 차. 피해가족<br>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br>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완도군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24조(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생략)                                                                                                                                                                      | 제24조(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개정안과 같음)                                                                                                           |
| ② 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u>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u> (이하 “ <u>전라남도대책본부</u> ”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u>전라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u> 를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br>-----<br>-----<br>-----<br>-----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u> (이하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대책본부</u>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u> -----<br>-. |
| ③ ~ ⑤ (생략)                                                                                                                                                                                      | ③ ~ ⑤ (개정안과 같음)                                                                                                                           |
| ⑥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u>전라남도재난피해자지원센터</u> 가 설치·운영되는 경우 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⑥ ----- <u>전남광주통합특별시재난피해자지원센터</u> -----<br>-----<br>----.                                                                                 |

【의안번호 제3621호】

##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7. 20.

다. 상정일자 : 2026. 7.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26. 7. 22.시행]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와 ‘완도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난 피해자들에게 효율적인 지원을 하기 위함

#### 나. 주요내용

- 통합지원본부 실무반 임무 추가(안 제7조제2항)
- 통합지원본부과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운영 시 임무 및 편제 (안 제7조제5항)
- 임무 및 표준편제 세부내역(별표 3)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와 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통합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기재생략

### 6. 심사의견: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로 한다.

제7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⑤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제5항에 따라 완도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실무반과 통합하는 경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br>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상황 발생 시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br>②·③ (생략) |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br>① -----<br>-----<br>「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br>-----<br>-----<br>-----<br>-----<br>-----<br>----. |
| 제7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생략)<br>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br>1. ~ 6. (생략)<br><신설><br><br>7. (생략)<br>③·④ (생략)<br><신설>                                                                     | 제7조(통합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br>-----.                                                          |
|                                                                                                                                                                                                          | 1. ~ 6. (현행과 같음)<br>7. <u>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u><br>8. (현행 제7호와 같음)<br>③·④ (현행과 같음)<br>⑤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완도군재난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  
는 실무반과 통합하는 경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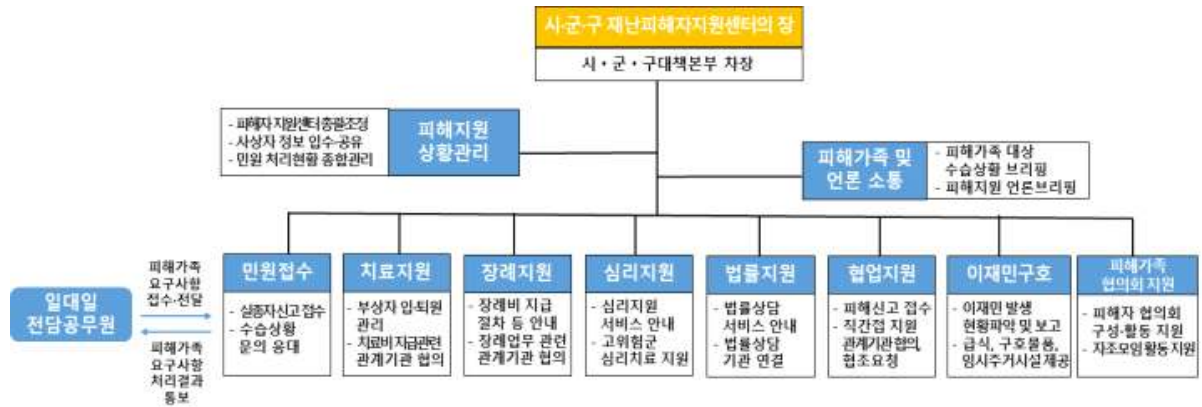
[별표 3]

완도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제7조제5항 관련)

1. 완도군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
| 가. 피해지원<br>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br>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br>3) 외국인 피해자 통·번역 지원 등 총괄 |
| 나. 피해가족 및<br>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br>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br>사항 안내     |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br>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퇴원 등 현황 관리<br>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br>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br>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연계<br>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br>2) 피해신고서 접수·처리 지원<br>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br>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br>3) 임시주거시설 제공                             |
| 차. 피해가족<br>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협의회 등 지원<br>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 2. 완도군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완도군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안번호 제3622호】

## 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6. 7. 7.

완도군수

나. 회부일자 : 2026. 7. 20.

다. 상정일자 : 2026. 7. 20.

###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상위법령(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의 세부 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관내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건축물 범위 정비(안 제8조)
-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건축물 범위 신설(안 제8조의2)
- 해체 공사감리자의 교체 규정 신설(안 제9조제4호)
- 지역건축물관리센터 →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안 제10조)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 범위를 정비하고, 해체 공사감리자 교체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기재생략

### 6. 심사의견: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임 조례안 1부. 끝.

## 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으로 한다.

제4조 중 “1,000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00제곱미터”를 “5백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석축”을 “사면 및 석축 등”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건축  
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  
는”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물을 말한다”를 “경우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따른 허가 대상”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건축법」 제83조제1항”을 “「건축법」 제8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  
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2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조립식판넬 또는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제9조제1호 중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을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의 “지역건축물관리센터”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br>-----,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br>-----.                                         |
|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이 <u>1,000제곱미터</u>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제4조(정기점검 대상) -----<br>-----<br>-----<br>-----<br>-----<br>-----<br>----- <u>1천제곱미터</u> -----<br>-----.     |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u>500제곱미터</u> 미만인 건축물 중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br>-----<br>-----<br>-----<br>----- <u>5백제곱미터</u> -----<br>-----<br>-----. |

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 4. (생략)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사면 및 석축 등-----  
-----  
-----  
--.

제7조(안전진단 대상) -----  
-----  
-----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  
--.

<삭제>

<삭제>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  
-----  
-----  
-----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  
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  
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 설>

1. -----  
따른 -----

2. 「건축법」 제83조-----  
-----

<삭 제>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대  
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12미터 반  
경 내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  
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  
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59조에 따라 맞  
벽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동시  
에 해체하지 않고 어느 하나의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  
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생략)

<신설>

건축물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  
하여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  
려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 및 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하층이 없는 지상 1층(높이  
6미터 이하) 건축물

2.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  
터 이내인 조립식판넬 또는 경  
량철골구조 건축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  
-----  
-----  
-----  
--.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

2. 국내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  
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현행과 같음)

4.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

|                                                                                                                        |                                                                                                                                                                             |
|------------------------------------------------------------------------------------------------------------------------|-----------------------------------------------------------------------------------------------------------------------------------------------------------------------------|
| <p>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u>지역건축물관리센터</u>(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 <p><u>런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u></p> <p>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br/>----- <u>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u>-----<br/>-----<br/>-----.</p> <p>②·③ (현행과 같음)</p> |
|------------------------------------------------------------------------------------------------------------------------|-----------------------------------------------------------------------------------------------------------------------------------------------------------------------------|